

일련번호	11	감사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서초구청 (나부서)	종류	인원	조치방법	금액(천원)

제 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지연통보 및 발주자 지연확인

【 지적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따르면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16. 9.,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된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사항의 정확여부 및 통보기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에서 아래 [표]와 같이 건설관계자(수급인, 하수급인)는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지연 통보하였으며, 발주자는 5개 건설공사장의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지연 확인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표] 건설공사대장 통보 및 확인 현황

연 번	공 사 명	수급인(계약일)	통보일(지연 통보일수)	발주자 확인일(지연 확인일수)
		하수급인(계약일)	통보일(지연 통보일수)	
1	◇◇◇ ◇◇ 및 ◇ ◇ 공사	A사('18. 2. 1.)	'18. 11. 21.(293일)	'18. 11. 21.
		B사('18. 3. 27.)	'18. 5. 8.(42일)	'18. 11. 21.(197일)
2	◆◆◆◆◆~◆◆◆ ◆◆◆보수보강공사	C사('18. 6. 20.)	'18. 7. 3.	'18. 11. 14.(128일)
		D사('18. 7. 9.)	'18. 9. 6.(59일)	'18. 11. 14.(69일)
3	□□□□□□□□ □ □□□□ 보수공사	E사('18. 8. 7.)	'18. 9. 6.	'18. 11. 14.(69일)
		F사 G사 ('18. 9. 27.)	'18. 11. 20.(64일) '18. 11. 20.(64일)	'18. 11. 20.

연 번	공 사 명	수급인(계약일)	통보일(지연 통보일수)	발주자 확인일(지연 확인일수)
		하수급인(계약일)	통보일(지연 통보일수)	
4	△△△△△△△ △△ △ △△△ △△△△ 보수공사	H사('18. 7. 16.)	'18. 8. 16.	'18. 11. 14.(90일)
		I사 J사 ('18. 8. 24.)	'18. 11. 14.(82일) 18. 8. 29.	'18. 11. 20. '18. 11. 14.(77일)
5	☆☆☆☆☆☆☆☆☆☆ ☆☆ ☆☆☆☆ 보수 공사	K사('18. 7. 11.)	'18. 7. 27.	'18. 11. 14.(110일)
		L사('18. 8. 20.)	'18. 9. 19.	'18. 11. 14.(56일)

【 조치할 사항 】

서초구청장은

건설공사대장을 지연 통보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시정명령 등)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등 확인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공사관리관 및 진행 중인 모든 공사관계자에게 지도·교육 하시기 바랍니다.(통보)